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p> <p>① · ② (생 략) ③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,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추가로 설정될 수 있다. 이 경우 제42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.</p> <p>1.~4. (생 략) <신 설></p>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p> <p>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,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추가로 설정될 수 있다. 이 경우 제42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.</p> <p>1.~5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5. 트러스트 빌류웨이 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</u></p>
<p>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</p> <p>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(생 략) 2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(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, -----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</p> <p>가. (생 략) 나.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, ----- 또는 <u>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</u>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<u>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</u> 또는 <u>주택저당증권</u>에 투자하는 경우</p>	<p>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</p> <p>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 2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(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, -----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 나.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, ----- 또는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</u> 또는 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<u>주택저당증권</u>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경우</p>

<p>다.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(그 법인 등이 -----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.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<u>유가증권시장,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</u>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,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.</p>	<p>다.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(그 법인 등이 -----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.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<u>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</u>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,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.</p>
<p>제33조(투자신탁의 회계감사)</p> <p>①(생 략)</p> <p>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.</p> <p>1. · 2.(생 략)</p>	<p>제33조(투자신탁의 회계감사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. <u>다만, 법 시행령 제26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 <p>1. · 2.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4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</p> <p>①(생 략)</p> <p>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~4.(생 략)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③(생 략)</p> <p><신 설></p>	<p>제44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~4.(현행과 같음)</p> <p><u>5.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u></p> <p>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, 합병 및 모자형 전환,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.</p> <p>④(호번변경)</p> <p>부 칙</p>

	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5년 2월 23일 부터 시행한다.
--	--